

의안번호	제 47 호
의결년월일	1997. . .

의결사항

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1997. 12 . (.

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7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'97. 11. .
제출자 : 사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 “보건소법”을 “지역보건법”으로 개정

3. 법적근거

- 지역보건법(법률 제5101호 '95. 12. 29)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보건소법 제8조”를 “지역보건법 제1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보건소법 제8조</u>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 - - - <u>지역보건법 제14조</u>의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</p>